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5. 6. 19.(목) 국무회의 종료시  
(지 면) 2025. 6. 20.(금) 조간

## 새마을금고 경영혁신 본격 시행 건전성과 관리·감독 강화한다

- 대형 금고 상근감사 의무화·외부 회계감사 강화 등 시행령 7월 8일(화) 시행
- 제재 조치 요구 대상 직원 범위 명확화...감독·제재 체계도 정비

□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본격적 이행을 위한 「새마을금고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이 6월 19일(목) 국무회의에서 의결돼, 7월 8일(화)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개정은 2023년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을 계기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제도 정비 조치다.

○ 시행령 개정을 통해 ▲대형 금고에 대한 상근감사 의무화로 내부 통제 기능 강화, ▲외부 회계감사 의무화로 회계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 제고, ▲직원 제재의 실효성 확보로 관리·감독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개정된 「새마을금고법 시행령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# < 1. 대형 금고 상근감사 의무화 >

□ 자산 8천억 원 이상 대규모 새마을금고는 앞으로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.

○ 기존과 같이 자산 500억 원 이상 금고는 상근임원(이사·감사)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, 자산 8천억 원 이상 지역금고는 반드시 상근감사를 선임하도록 했다.

- 상근감사는 감사, 회계, 재무 등 관련 분야의 경력이 요구되며, 전문성과 상시 통제 기능을 확보해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## < 2. 대형 금고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>

- 자산 3천억 원 이상 금고는 매 회계연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.
- 현재 자산 500억 원 이상 금고는 행정지도를 통해 격년마다 외부감사를 받고 있으나, 이 중 자산 3천억 원 이상 대규모 금고에 대해서는 매년 외부감사를 의무화해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한층 높인다.

## < 3. 직원 제재 실효성 강화 >

- 또한, 법률에서 위임한 제재 조치 요구만 가능한 직원의 범위를 최소화해, 실질적인 업무 책임이 있는 금고의 간부직원(전무·상무)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직접 제재 조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.
- 이와 함께, 제재 조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내에 ‘제재심의회’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,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 역시 강화된다.
-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“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다”라며,
- “앞으로도 제도개선과 관리·감독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새마을금고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”고 밝혔다.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지방재정경제실<br>지역금융지원과 | 책임자 | 과 장 | 김대영 (044-205-3941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이화영 (044-205-3946) |

## 참고

##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

| 구분 |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현 행   | 개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상근감사 임명<br>의무 대상 금고          | <신 설> | 자산총액 <u>8천억원이상</u><br>지역금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내부통제 강화를<br>위한 상근감사 선임<br>의무 대상 금고<br>기준을 시행령으로<br>위임     |
| 2  | 외부 회계 감사<br>의무 대상 금고         | <신 설> | 자산총액 <u>3천억원이상</u><br>금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회계 투명성 제고를<br>위한 의무 회계감사<br>대상 금고 기준을<br>시행령으로 위임         |
| 3  | 제재조치 요구만<br>할 수 있는<br>직원의 범위 | <신 설> | 금고의 간부직원(전무·상무)을<br>제외한 직원은 제재조치 요구<br>만 가능<br><br>※ <u>금고의 간부직원은 직접</u><br><u>제재 가능</u> | 제재 실효성 강화를<br>위해, 제재 요구만<br>할 수 있는 직원의<br>범위를 시행령으로<br>위임 |